

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

변경사항	첨 부 서 류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삭제 <2009.4.20> 다.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